

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12일, 박선하 의원 외 14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4년 4월 23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선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 휴가를 신설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공형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중복 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(제14조제2항 및 제8항)
-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에 대해 쉬운 용어로 조문 수정
(안 제14조제6항)
-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 보호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9항)
-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10항)

3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병기)

□ 개정내용 검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¹⁾ 제7조의7 제1항에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함.

1)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

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- 「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4조 제4항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규정함에 있어 용어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할 사용을, 나누어 사용²⁾으로 문구를 수정하였고
- 제9항을 신설하여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, 모성보호를 위한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제10항을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을 위해,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

□ 종합 검토의견

- 제14조 제2항 및 제8항의 삭제는 상위법령 충복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, 동조 제6항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 규정 개정은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한 것이며
-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

2) 1회 분할 사용 → 2회까지 나누어 사용. 3회 분할 사용 → 4회까지 나누어 사용, 5회 분할 사용 → 6회까지 나누어 사용으로 개정

제공(동조 제6항)하고,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제공(동조 제9항)하는 것은,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사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의 사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